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0. 8 선고 2024가단1154 판결 [건물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4.

판결 선고2024. 10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층 전부 238.48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3. 21.부터 위 가.항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희

별지